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3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760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5. 7. 9.
판 결 선 고	2015.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1,296,000원, 지방교육세 16,129,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8,064,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3

가. 원고는 2012. 12. 18.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던 [redacted]시 B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3. 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 2. 15.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호에 따른 100분의 50 경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0,240,000원, 지방교육세 16,024,000원, 농어촌특별세 8,012,000원 합계 184,276,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의료법인 [redacted]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이 사건 의료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의료재단이 설립된 후인 2013. 10. 16. 위 의료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시설 일체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년 이내에 이 사건 의료재단에 이를 증여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 161,296,000원, 지방교육세 16,129,600원, 농어촌특별세 8,064,800원 합계 185,490,4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4. 피고로부터 불채택 결정을 받았고, 이후 경기도지사에게 지방세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4. 10.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3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한지 2년 이내에 이 사건 증여를 하기는 하였으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한 취지는 해당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없음에도 취득세 감면 조항을 악용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세를 하는 등 위법한 사례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데, 원고는 재산의 사회 환원을 위해 이 사건 증여를 하여 이 사건 의료재단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을 뿐 위 조항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한바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손해가 현저하게 크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20조 제2호에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3

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94조 제2호에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이하 '이 사건 추징요건'이라 한다)를 애초에 해당 용도로 사용할 의사 없이 취득세 감면 조항 등을 악용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세를 할 의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로 제한해야 하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관련 법령 및 앞서 본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추징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족하고 취득세 감면 조항 등을 악용하여 탈세 등을 할 의도까지 필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한지 2년 이내에 이 사건 증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한다.

① 위 법 제20조 제2호의 취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데, ㉠ 위 법 제94조 제2호에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각·증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일단 '매각·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 위 법 제94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3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징대상으로 규정한 반면, 위 제94조 제2호에서는 단순히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할 것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증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를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법 제94조 제2호는 그 문언상 취득세를 감면받은 소유자가 적어도 2년간 소유권 변동 없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함으로써 위 법 제20조 제2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조항과 그 내용이나 규정 형식이 유사한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 중의 하나로 각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었는데, 그 본문 단서에서는 당초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을 추징사유로 규정하였으나 해당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공익사업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곧바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에 반함에도 그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이를 추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추가하였고, 이후 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제2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면제),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3

등에서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무상 양도의 경우에도 추징의 대상이 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③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인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는 당초 노인정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었다가 이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및 제94조에서 노인복지시설 일반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후 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해당 용도로 사용한지 2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까지 추징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④ 한편, 취득세는 매매·증여 등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 내지 취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여러 차례 이전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득 시마다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 되는데, 입법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의 어려움과 과세불평등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인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은 해당 시설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해당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곧바로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해당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3

지 못한 채 세수만 감소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매각하거나 증여하기에 앞서 일정한 기간을 해당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세수확보, 과세형평 등의 측면에서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매각과 달리 납세의무자가 감면받은 부동산을 대가없이 처분하는 증여도 추징대상에 포함시킨 입법자의 의도는 증여를 가장하여 추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것 외에도 처분에 따른 대가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공익 목적의 사회기반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처분을 사실상 제한하려는 데에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입법취지 역시 그 정당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⑤ 또한 이 사건 추징요건은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수증자가 취득세의 감면대상인지 여부나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징요건의 문언도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나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부가하지 않고 있다.

⑥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는 요건으로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사용한 후 매각·증여하도록 하는 것은 위에서 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보일 뿐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취득세 추징조항을 뒤집어 보면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사용하면 그 후부터는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의료의 공공성이나 사회복지 장려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3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관련 법령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필요적으로 일정한 세율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다가 위 법 제94조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에게 추징 여부를 결정하거나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순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3

판사 정경희

판사 강미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3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3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